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8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임호선·박용진·김성주

최혜영 · 이학영 · 이장섭

서삼석 · 박영순 · 오영환

김남국 · 이규민 · 정태호

양기대 • 윤준병 • 임종성

윤재갑 • 양경숙 • 장경태

김홍걸 · 김경만 · 문진석

박광온 • 황운하 의원

(2391)

제안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하여 왔음.

최근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나 따라다니기 등 괴롭힘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 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대범죄로 나아가기 이전 위험 상 황에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 2조제1호).
- 다.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향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스토킹행위 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요청 등 절 차를 안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안 제5조),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먼저 보호조치(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마.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각 이들에게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안 제15조).
- 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보호조치 또는 긴급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제16조 및 제18조).
- 아.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이 에 대한 이행을 불응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 1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및 그 동거인, 친족, 직 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리 절차

- 제3조(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제5조제2항의 보호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 4.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보호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조치의 청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 제6조(긴급보호조치 후 보호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보호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시 그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보호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할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제8조(보호조치의 집행 등) ① 판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 게 보호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보호조치 후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법 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보호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보호조치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보호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보호조치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제10조(항고) ① 제7조의 보호조치에 있어서 그 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수 있다.
 - ②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12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

하여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15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 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 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 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 제16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 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

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 제18조(보호조치 등 불이행죄) ①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제7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스토킹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